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서왕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776

발의연월일 : 2026. 7. 6.

발 의 자 : 서왕진·김준형·황운하
김재원·이해민·강경숙
차규근·박은정·정춘생
신장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, 지역수자원관리계획,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「물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장기 기본계획들이 통합됨에 따라 하위 계획들이 중복되거나 체계상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음.

이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물관리 법정계획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등).

법률 제 호

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삭제한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제1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은 「물관리기본법」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.

⑥ 시·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·변경하였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보내야 하며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4항까지에서”를 “제3항까지에서”로 한다.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·군·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

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치수계획(이하 “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「물관리기본법」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수자원장기종합계획, 수문조사기본계획,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”을 “수문조사기본계획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”을 “수자원계획은 「물관리기본법」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,”로, “하며, 다른 법령에 따른 수자원 관련 계획(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계획은 제외한다)의 기본이 된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「물관리기본법」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「물관리기본법」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변경되어 해당 하천유역

수자원관리계획의 내용을 포함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수자원장기종합계획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종합계획(이하 “수자원장기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.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·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. 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. 공청회의 개최 3.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·변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	<삭 제>

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·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제18조(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·이용,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(이하 “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.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·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. 1. 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. 공청회의 개최	<삭 제>

3.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(하천유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말한다)에 대한 자문 4.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·변경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별로 하천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며, 「하천법」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.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·변경하였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		

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보내야 하며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하천유역의 범위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·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제19조(지역수자원관리계획) ① ~ ④ (생 략)	제19조(지역수자원관리계획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.	⑤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은 「물관리기본법」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.
⑥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및 열람에 관하여는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.	⑥ 시·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·변경하였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시장·군수

	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보내야 하며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20조(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치수계획(이하 “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1. 둘 이상의 시·군·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 2. 삭 제	제20조(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·군·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치수계획(이하 “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②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.	②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「물관리기본법」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	<삭 제>

립·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	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·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⑤ ----------제3항까지에서 ----------.
제21조(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, 수문조사기본계획,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,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(이하 “수자원계획”이라 한다)이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.	제21조(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) ① ----------수문조사기본계획-----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22조(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) 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「국토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, 다른 법령에 따른 수자원 관련 계획(수질 및	제22조(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) ① 수자원계획은 「물관리기본법」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,----------한다.

수생태계 관련 계획은 제외한다)의 기본이 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